-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 -

專門委員 檢討報告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0월 30일

○ 회부일자 : 2004년 11월 5일

❑ 제안 이유

○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충북본부(대표:성방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7월13일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 청구서가 접수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9 규정에 의거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덧붙여 도의회에 부의하게 되었음.

○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충청북도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 안정을 기하는데 있음.

❑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1조)

- 성장기 학생의 심신발달 및 지역과 국내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

○ 학교급식과 관련한 도지사, 교육감, 학교장의 노력 의무규정(안 제2조)

○ 학교급식 등 용어 정의(안 제3조)

○ 학교급식 직영원칙 규정(안 제4조)

○ 학교급식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5조)

- 도지사 :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 및 재정지원 책무
- 도지사, 시 군자치단체장, 교육감 : 최우선적으로 지역과 국내 우수 농산물 사용 지도 감독 의무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안 제6조)

○ 도지사는 식재료구입비 지원 의무화(안 제7조)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을 통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안 제8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안 제9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안 제10조)

-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 심의, 의결

○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규정 :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안 제11조)

○ 지정판매업자의 의무규정(안 제12조)

▢ 검토 의견

○ 『충청북도 학교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며,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학교급식은 식습관과 평생건강을 결정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 장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로 학교급식의 부실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나,

○ 현실에서는 위생관리의 허술, 질낮은 식품재료 사용 특히 저급 수입농산물까지 급식재료로 사용함으로써

- 식중독 사고와 같은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때문에 그동안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부실한 학교급식의 운영 방안을 개선시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돕기 위하여 시민단체가 직접 조례안 제정 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조례안을 제출한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본부 임원과 집행부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현지 확인도 한 바 있습니다.

○ 그중 주요쟁점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행정자치부에서 WTO농업협정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조례안 제1조 등의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사용 의무화 표기 문제

- 둘째, 집행부에서 재정상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조례안 제3조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포함 여부와 제5조의 학교급식시설 설비 지원 문제

- 셋째, 조례안 제11조의 『**지정판매업자의 자격 및 신청**』에 대한 조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 독점에 따른 특혜의 우려가 있다는 점

- 넷째,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가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와같은 주요쟁점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 표기에 대해서는

- 현재 행정자치부나 외교통상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GATT 제3조에 따라 상품무역에 있어서 내·외국산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원칙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대해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에 따라 2004. 12. 24일 행자부장관으로부터 대법원에 제소중인 전북, 경남, 경기도 등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판결시까지 조례제정 절차 진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표준 조례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우선사용 또는 의무화 규정은 외국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에 대해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분쟁소지를 막을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공급하는 규정은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학교급식 지원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 현재 도재정자립도가 26.2%인 어려운 재정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으로 막대한 학교급식비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의 예산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6추84)에 따라 시·군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비와 함께 시설비까지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셋째, 지정판매업자를 비영리 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한정하는 것은

-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납품 독점에 따른 특혜의 우려가 있고 이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급식재료의 공급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교육감이 아닌 도지사가 학교급식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이 바람직한가 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법 제112조에『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22조에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시·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학교급식법 제6조 제1항에서는『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서는『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교육행정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볼 때 도지사는 식품비에 소요되는 경비만을 지

원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급식을 위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이유로 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 교육감 권한 침해에 따른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의 중복화로 급식 업무추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므로 도지사는 급식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계획수립과 함께 운영 전반에 대해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한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 임 : 충청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안